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변론 : 용서의 신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석창훈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 종교학)

제석봉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사회복지학)

- I. 들어가며
- II. 사형제도에 대한 역사적 논박
- III. 사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비판
- IV.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된 용서의 신학적 의미
- IV. 나오며

---

• ABSTRACT •

---

There is debating whether the capital punishment system is another violence by state power or it is a necessary evil for the public order in Korea. Some people insist that the capital punishment should be used as a tool to restore a harmonizing balance to human society, and others people insist that the capital punishment is too cruel of punishment regardless of the crime. Accordingly, Many political, civic, religious community's members believe to impose the capital punishment on an individual deprives that person of their dignity and insist that the capital punishment should be abolished.

Recently, movements are actively inaugurated of the abolishment of the capital punish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thical rationale for the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system based on christian forgiveness.

This study is consist of two approach about the capital punishment, Firstly, I have looked abou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apital punishment. This review are expand our perspective about the capital punishment, and give us critical viewpoint about it. Secondly, I suggested that forgiveness is the very best gift received by God.

Actually, forgiveness is not performed easily in daily life. But love and forgiveness based on christian spirituality are stronger than hatred and vengeance. The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system bring Love of Christ into christian forgiveness. Conclusively,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system be accomplished our country as soon as possible.

**Keywords:** the capital punishment system,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reten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forgiveness

---

## I. 들어가며

사형(死刑)! 국가 권력에 의한 또 다른 폭력인가 아니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악인가? 지난 2004년 12월 9일에 발의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유인태 의원 대표 발의, 175명 국회의원 서명)이 여론 형성과정을 거쳐 2006년 4월 현재 임시국회에서 통과여부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종교계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연합’이 중심이 되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중이다. 또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가 2006년을 ‘한국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의 해’로 지정할 정도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다.

사형이 지닌 제도적 모순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 차원에서 사형제도 폐지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 여전히 국민의 법 감정을 바탕으로 사형제도 폐지에 소극적, 또는 부정적 의견 역시 만만찮은 현실이다. 실제로 잔혹한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패륜적인 가정과괴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의 존치를 지지하는 여론이 비등해진다. 일부 정치세력에서는 이런 주장에 편승하여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애써 회피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사형제도에 대한 상반된 사회적 주장과 이슈에 대해 기독교 사회윤리학 차원에서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논의는 학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기독교계 내에서조차 사형제도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sup>1)</sup>에서 이제는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 신

1) 2005년 8월 1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사형제도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세미나에서 “인간 생명 존중을 위해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하며, 사형 폐지론은 성서적이지

학적 문제해결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가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성경적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조망함<sup>2)</sup>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이론적 패러다임 구축에 기여하였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신학적 주목에는 의의가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윤리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이른바 이론(theoria)은 넉넉하나 실천(praxis)이 빈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신학적 변론과 구체적 실천행위로 용서를 통한 접근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살인자를 용서하고 사형제도 폐지에 앞장선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이다.<sup>3)</sup> 본 연구자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시민단체 실무자로 활동하면서 수행하였던 생명수호캠페인 현장에서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생명권에 대한 이중 감정<sup>4)</sup>을 극복하고, 생명윤리를 강화하는 첩경은 용서의 신학임을 절실히 터득한 바 있다.

---

않다”고 결론 내렸으며, 8월 26일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한기총의 주장이 궤변이며,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생명권 존중차원에서 사형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국일보, 2005년 9월 1일 참조)

2) 대표적인 연구논문으로 김해철, “사형제도 폐지와 성서적 교훈”, 『신학과 신앙』 12집, 2001 / 이광호, “사형제도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철학논총』 26집, 2001 / 조영신, 『인권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고찰』,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오승주,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기독교윤리적 연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등이 있다.

3) Rachel King, 황근하 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 (서울: 산티, 2006), p. 17.

4) 국제엠베스티한국지부, 낙태반대운동연합, 국제생명운동 한국지부(HLI-Korea), (사단법인) 푸른평화가 5월 마지막 주일에 개최하는 “생명을 선택하십시오(Choose LIFE)” 캠페인 현장에서 낙태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 정도가 반대하면서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낙태반대 응답자의 10명 중 7명 정도가 반대하였다. 그리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죽일 놈은 죽여야 한다.’, “네 가족이 무참하게 살해당해도 용서할 것인가?” 등의 의견을 제기하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사형수의 생명권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중 잣대를 나타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은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용서는 응보와 복수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 자리에 회개와 변화-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변화-의 힘을 주며, 사형제도를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활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기독교인의 존재지평(Seinhorizont)을 확대시키는 영적 무장이 될 것이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sup>5)</sup>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형제도에 대한 역사적 논박을 조망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연구 주제로 용서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 II. 사형제도에 대한 역사적 논박

형벌은 죄처럼 오래된 것이다. 죄가 이 세상에 온 이후로, 죄와 관계되는 것이 형벌이며, 형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속되어 왔다. 그러므로 죄와 형벌은 인간의 삶과 연관되는 것으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회의 공권력은 처음부터 형벌을, 특히 사형을 죄와 악에 대항하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강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다. 이때 관습과 규범이 사회적 틀로 정형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사형 제도이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둘러싼 역사적 논박과정을 재조명해보는 것은 사형이 인간의 역사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왔고, 또 실행되고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봄으로써 사형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사형이라는 제도적 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5) Charles Stanley, 민혜경 역, 『용서』, (서울: 두란노, 2006), p. 41.

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의 시초를 고조선 사회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한서(漢書)의 지리지(地理志) 연조(燕條)에 의하면, 고조선 사회에서는 『팔조법금』(八條法禁)이 있는데, 현재 전해지고 있는 3가지 조목은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며(相殺 以富時償殺), 둘째, 사람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배상하게 하고(相傷 以穀償),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相盜 男沒入爲家奴 女子爲婢)는 것이다. 이 조항을 통해 고조선에서는 사회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살인에는 사형이라는 탈리오(Lex Talionis)식 형벌체계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6)</sup> 마찬가지로 부여의 법속에서도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데려다가 노비로 삼으며, 간음한 자와 부인의 투기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 삼한 시대의 경우에도 고대의 공통된 법속에 의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수단으로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다른 고대 국가와 다름없이 민·형사 구분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가족적, 도덕적 규범의 형벌화라는 느낌을 주었다.<sup>7)</sup>

같은 맥락에서 고대 서구사회에서 대표적인 사형제도가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나는데 이 법전에서는 제 1 조부터 광범위하게 사형을 인정하고 구체적이며 잔인한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형벌은 이성적이라기보다 복수의 감정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오히려 범죄보다 더 커다란 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 국가가 형벌권을 가짐으로써 '사적 복수'(private vengeance)가 아니라 '공적 복수'(public vengeance)를 하게 됨으로써 사형은 국가 목적 수행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받는 대로 갚는다’는 탈리오 사상은 사형을 합리화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말았다.<sup>8)</sup>

6)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I』(서울: 법문사, 1984), p. 37.

7) 이수성, “사형폐지론 소고”, 『법학』 13(2), (서울: 서울대법대, 1972), p. 52.

8) 예장통합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엮음,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서울: 쿰란출판사,

한편, 유럽 역사에서 형벌제도의 설정이 처음 나타나는 것<sup>9)</sup>은 기원전 4세기 중엽인데 그리스의 피타고라스(Pythagoras)는 보복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형벌제도의 설립을 시도하였다. 피타고라스에 따르면 국민관을 바탕으로 형벌제도를 통하여 정당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프로타고라스(Protagoras)는 이 이론에 반대하고, 선과 악, 정의와 불의는 인정법(人定法)의 결과로 보고, 보복 대신에 위협과 개선 즉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와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런 상반된 주장은 결국 소크라테스(Socrates)의 사형으로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기원전 399년 소피스트와 보수주의자들은 소크라테스가 ‘국가의 신을 신봉하지 않고, 청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고소하여 500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법정에서 다수결(찬성 360명: 반대 240명)로 사형을 판결하도록 이끌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행한 변론을 통해 자신에 대해 뿌리 깊은 편견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재판관의 자비에 호소하기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해 더 주의를 지니도록 촉구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우리는 가야 한다. 나는 죽음으로, 당신들은 삶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인지는 오직 신만이 안다.”<sup>10)</sup>는 말을 남기고 감옥에 끌려가 얼마 후 독배를 마시고 70세의 생을 마감하였다. 소크라테스의 사형 평결과 집행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그리스 사회의 우민통치(愚民統治) 산물이라는 점은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한편 형벌제도에 대한 플라톤(Platon)의 견해는 경험적 실재성과 자신의 이상적 세계관 사이의 갈등을 낳았다. 플라톤은 자신의 이상적 국가론

1996), p. 11.

9) 김정우,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대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1996), pp. 13-17 참조.

10) Platon, 최문홍 역, 『소크라테스의 변명』 (서울: 성창출판사, 1989), p. 443.

안에서 형벌제도를 위한 절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형벌제도는 신의 명령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형벌의 근본적인 목적은 범죄로 인해 손상된 신적인 조화를 복구하고 보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플라톤에 의하면 범죄는 영혼의 질병에 의한 산물로서 이 질병으로 인해 환자 자신뿐 아니라 시민 그리고 국가 전체가 이 질병에 전염될 수 있다는 범죄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플라톤은 이 질병이 치유될 수 없다면 범죄자로부터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플라톤은 그의 『법률편』(Nomoi)에서 “입법자(立法者)는 개개인에게서 개선의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을 위해 법적으로 적합한 형벌을 제정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범죄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형벌의 실체에 대해 명확한 이론을 확립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을 통해 형벌이 지닌 정의(正義)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는 국민의 평등을 돌보는 것이 임무이며, 누구도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범죄를 통하여 이 평등에 장애가 생기고, 범죄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형벌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형벌은 정의의 대응인 셈이다. 이와 같이 형벌제도는 손상된 평등을 복구하는 의미와 아울러 형벌을 치유책에 비유한다는 측면에서 플라톤과 마찬가지로이다.

한편, 후기 그리스 철학에서는 형벌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스토아 학파로서 엄격한 절대적 형벌 이론을 주장한 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형벌의 이점과 죄와 벌 사이의 정확한 형평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형벌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상반된 주장은 이후 여러

사상가-예를 들면, 로마 시대의 키케로(Cicero), 세네카(Seneca) 등-들이 사형을 중심으로 한 보복의 사상이 지닌 윤리적 한계를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1)</sup>

중세 서방 교회에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대부이자 스콜라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사형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신학대전』(*Summa Theologiae*) 안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는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로 사회를 힘들게 한다든지 누를 끼치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것은 현명하고 유익한 것이다”<sup>12)</sup>라고 전제하였다. 이런 출발점은 토마스 아퀴나스로 하여금 사형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게 하고, 그 이유로 사형이 신의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것이며, 범죄자의 처형은 전체 사회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악의 근본적인 근절은 선한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사회의 안전과 안녕,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형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은 이후 수백 년간 유효하였고, 오늘날에도 가톨릭교회의 영역만 아니라 사형에 대한 이론의 바탕을 넓게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중세 종교 개혁자인 말틴 루터(Martin Luther)는 “사형은 신의 명령이며, 사형의 집행은 신에 대한 봉사이다”라고 하면서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속의 칼과 법이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1525년경 당시의 봉건 영주들과 고위 성직자들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나머지 독일에서 농민전쟁이 발생했을 때 농민들의 입장에 매우 동

11) 김정우, op. cit., p. 19.

12) Thomas v. Aq., *Summa Theologiae* 2, 2 q. 64 a. 2 "Et ideo si aliquis homo sit periculosus communitati et corruptibus ipsius propter aliquod peccatum, laudabiliter et salubriter occiditur, ut bonum commune conservetur"

정적이었던 루터는 “칼을 휘둘러 침수하는 손은 이미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해 작은 악으로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칼을 사용하는 것은 신성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14-16세기 서구 유럽의 절대 군주 국가에서는 왕권 보호를 목적으로 사형의 적용 범위를 넘어 전무후무하게 많은 사형을 집행하였으며, 이 시대의 사형폐지론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형방법도 잔인하여 화형, 질식사, 수장, 독살, 책형, 차열형, 박살형, 말벌로 죽이는 형, 그리고 개미나 파리에 의해 죽이는 형도 있었다고 한다. 사형은 군중 앞에서 공개 집행되었으며 이 시대에는 중국에서도 사형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sup>13)</sup>

중세 이후 근대에 접어들면서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 인권을 재발견한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출발점은 1764년 이탈리아 밀라노에 사는 25세의 법률가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가 펴낸 『범죄와 형벌에 대하여』(*Dei delitti e della pene*)이다. 이 저서의 16장에서 베카리아는 “사형제도가 국가 통치 목적에 합당한 제도로서 유용하고 정당한가?”에 의문을 던지면서 한 세기 동안의 역사적 사건을 회고한 후 사회가 사형제도를 통해 결코 범죄 사실을 막을 수 없다고 논증하였다. 그리고 대안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적인 죽음(사형)보다 노예제도 즉 종신 징역형이 더 냉혹하며 범죄 억제력을 지님을 주장하였다. 사회 계약설을 형사정책, 형벌이론에 도입한 베카리아는<sup>14)</sup> 형벌의 목적이 사회 일반인과 범죄인에 대한 경고를 통해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

13) 김해철, “사형제도 폐지와 성서적 교훈”, 『신학과 신앙』 12집(서울: 루터대학교 출판부, 2001), pp. 216-217.

14) 이형국, “베카리아의 형벌사상에 대한 소고”, 『권문택교수회갑기년논문집』(서울: 연세대학교, 1983), pp. 175-176.

고 보고, “형벌이란 일반 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범죄를 최대한로 억제하는 것은 형의 엄격함이 아니라 그 확실성 내지 필요성 때문”이라면서 사형제 폐지를 주창하였다. 이러한 베카리아의 주장은 그 당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당연한 형벌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도의 오류를 지적한 선구적 행위였다.

베카리아가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후 그의 저서는 많은 문화권에 번역되어 널리 유포되었다. 그 결과 1829년 프랑스의 위고(V. Hugo)가 『사형수 최후의 날』이란 소설을 통해 당시의 사형집행방법을 비판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볼테르(Voltaire)는 베카리아의 저서를 유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쉴러(Schiller)는 철학적인 역사 기술의 관점에서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훔볼트(Humbolt)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고찰하였다. 이런 사상적 흐름은 박애를 기치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을 통해 사형의 이론과 실제의 모순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하였다.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 시대사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형을 지지하는 견해로 프랑스의 사상가요 교육가였던 루소(Rousseau)는 자신의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사형존치론을 주장했으며, 칸트(I. Kant)는 응보론과 일반 예방론의 입장에서 베카리아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사형존치론을 주장했다. 칸트에 의하면 범죄는 자유의사를 가진 자들의 도덕률에 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벌은 필연적인 응보로서 정의 명령이라 보았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도래하여 국가가 해체되는 경우에도 감옥에 남아있는 사형수는 한 명도 남김없이 집행되어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이 세상은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고 보았다. 칸트는 인류 보편적 정의는 범죄자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형벌을 감함으

로써 균형적 정의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sup>15)</sup> 그리고 밀(J. S. Mill)은 1869년 영국의회에서 사형폐지론을 반박하면서 공리주의 입장에서 사형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종교가였던 길핀(Bernard Gilpin)은 의회 연설에서 사형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고, 그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그 원리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사형제도를 주장하였다. 그의 사형제도 폐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사형은 본질적으로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형이 사회의 이익(interests of society)을 근거로 한 것이다. 셋째 근거는 오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넷째는 용서라는 기독교적 개념에 호소하였다. 즉 사형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즉 범죄가 잔악할수록 회개의 필요도 더욱 커지는데 그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이외에도 사형이 장기 징역보다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방어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사형을 존치하는 현행법 하에서도 많은 살인 사건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이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사형의 완전한 폐지와 형법전에서 복수의 원리를 제거함으로써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이제까지 보다 더 존중되고 그 존엄성의 인식이 그에 따른 국민의 보다 증진된 안전을 가져올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 하에 개정을 제안합니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sup>16)</sup>

15) I. Kant, "Retributivism: The Right to Capital Punishment" in Louis P. Pojman, *Life and Death : Grappling with the Moral Dilemma of our Times*(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1999), pp. 368-370.

16) 예장통합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op. cit., p. 13.

### III. 사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비판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2006년 1월 자료<sup>17)</sup>에 의하면 전 세계의 86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해왔다. 11개국은 전범과 같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해왔으며, 25개국은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들 국가는 법률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해오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지를 확립 시켰거나 국제적인 헌신을 다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법률상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전 세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22국에 달한다. 이에 반해 74개 국가<sup>18)</sup>나 지역은 현재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직 사형제도를 주장하는 국가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선진국가로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등이며, 대다수가 정치수준과 민주화 역사가 짧은 제 3세계 국가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국제사면위원회 사형제도 국가별 현황 리스트(2006년 1월 1일) / [www.amnesty.org/library/](http://www.amnesty.org/library/)

18) AFGHANISTAN,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IZE, BOTSWANA, BURUNDI, CAMEROON, CHAD, CHINA, COMOROS, CONGO (Democratic Republic), CUBA, DOMINICA, EGYPT,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BON, GHANA, GUATEMALA, GUINEA, GUYANA, INDIA, INDONESIA, IRAN, IRAQ, JAMAICA, JAPAN, JORDAN, KAZAKSTAN, KOREA (North), KOREA (South), KUWAIT, KYRGYZSTAN, LAOS, LEBANON, LESOTHO, LIBYA, MALAWI, MALAYSIA, MONGOLIA, NIGERIA, OMAN, PAKISTAN, PALESTINIAN AUTHORITY, PHILIPPINES, QATAR, RWANDA, SAINT CHRISTOPHER &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 GRENADINES, SAUDI ARABIA, SIERRA LEONE, SINGAPORE, SOMALIA, SUDAN, SWAZILAND, SYRIA, TAIWAN,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RINIDAD AND TOBAGO,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VIET NAM, YEMEN, ZAMBIA, ZIMBABWE(74개국)

〈표 1〉 연도별 사형제도 폐지 국가 연도별 추이

구분	1989	1999	2002	2006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폐지 국가	35	68	74	86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제도 폐지 국가	18	14	15	11
법률상으로 존치한 실제론 폐지 국가	26	23	22	25
사형제도 폐지국가	79	105	111	122
사형제도 존치국가	101	90	84	74
전체국가	180	195	195	196

그리고 해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나라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참조> 2002년과 2006년의 4년 사이 사형제도 폐지 국가가 11개국이나 된다는 점은 사형제도 폐지가 전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엠네스티 자료에 의하면 2001년 한 해 동안 총 68개국에서 5,265명의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총 31개국에서 3,048명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전체 사형 집행 중 90%가 중국(2,468명), 이란(139명), 사우디아라비아(79명), 미국(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갑오경장 때인 1894년 12월 27일의 칙령 제 39호에 의하여 참형과 능지처참형을 폐지하고 일반 사형은 교수형, 군사형은 총살형으로 정한 것에서 사형제도가 근대적 의미의 형벌체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서양형법이 계수된 것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의 형법대전 제 94조와 1911년 조선총독부 제령 제 11호, 조선 형사령으로 일본형법을 의용한 일제강점기 시대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사형제도가 일제의 체제유지 수단으로 정치범들에 의한 사형이 취해져 애국·독립선열들이 목숨을 잃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사형제도의 악용을 없애기 위해 헌법 제 9조에 사형제도 폐지를 규정하기도 하였다.<sup>19)</sup> 문제는

해방 후 건국과정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아무런 비판이나 검토 없이 이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형을 인정하여 오늘<sup>20)</sup>에 이른 것이다. 법무부에 의하면 1948년 건국 이후 현재까지 사형으로 집행된 사람은 모두 902명(연평균 19명)에 달하며, 최근 들어 6공 때는 39명, 문민정부 때는 57명의 사형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사형제도 폐지가 시대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첫째, 사형은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며, 둘째, 사형은 이러한 흉악범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응보이고, 셋째, 사형은 그것의 존속을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며 정의 관념에 합치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사형제도 존치론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비판을 진행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며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위하력에 대하여 서독처럼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 범죄가 증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뿐만 아니라 2000년, 『뉴욕타임즈』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의 12개 주와 1983년 이후 사형제도를 부활시킨 36개 주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형제도를 부활한 주의 살인 사건 발생률은 사형제도가 없는 주의 수치 보다 낮지 않았다. 또 가장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여년간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온 주의 살인사건 발생률이 48%로, 사형제도가 없는 주의 경우 보다 101%나 더 높은 수치였음을 보도하였

19) 김영수, 『한국헌법사』 (서울: 학문사, 2000), p. 226.

20) 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는 형법에서 살인죄 등 16개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 형법에서 32개 죄, 군형법에서 반란죄 등 33개 죄가 있으며, 개폐가 논란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 4개 죄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 군사법원의 실태는 외부에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으며, 일반 법원에서는 매년 평균 약 20건 정도의 사형이 선고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21)

둘째, 사형제도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응보의 사상’과 ‘속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는 정의의 요구처럼 비취지고, 후자는 범죄자의 자기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도덕적 속죄라 할 수 있다. 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살인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배상이 된다는 논리는 야만스러우며 전근대적 사고이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지 않기에 이로써 정의를 실현하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형벌의 본질이 ‘교정’(矯正)으로 보는 현대의 형벌관에 비추어 응보로서의 사형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국민감정과 여론에 편승하여 국민의 법감정을 존중하지는 주장이 사형제도 존치론자의 핵심 구호이다. 그런데 국민감정이란 유동성과 가변성이 아주 많기에 이를 존치론의 근거로 삼기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1992년 5월의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도 존속 의견이 66.5%, 폐지 의견이 20.2%, 모르겠다가 13.3%였다. 그런데 지난 200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54.3%가 사형제도 존속을, 45.3%가 사형제도 폐지를, 무응답자는 0.4%에 불과하였다. 8년 동안의 세월 속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이 2배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를 전후한 사회적 이슈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한다는 점이다. 가령, 흉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한 직후에는 당연히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형제도 지지층이 증가한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이 자주 들먹이는 여론과 국민의 법감정 역시 이러한 사건 이후 발생한 여론 조사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실제로 사형제도의 존치론을 주장하는 일부 보수 입법자들과 정치인 중에는

21) Rachel King, op. cit., p. 13.

2006년 4월 임시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특별법의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면서, “조만간 대형사건 한번 터지면 사형제도 폐지 이야기가 쑥 들어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형제도 폐지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단지 위하력이나 속죄감, 일부 국민의 합리적인지 않은 법감정의 근거 보다 차원 높은 논리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형폐지 논거들이 추가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형제도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즉 사형제도의 인도주의적 논거의 핵심에는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중 보장’이라는 사상이 있고 국가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런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보하는 것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형제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오판’과 ‘악용’의 문제이다.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는 것이 인간이므로 인간이 지닌 한계성은 언제나 오판과 악용의 소지가 있으며, 역사적 사건<sup>22)</sup>에서 충분히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존속시킬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도덕적, 윤리적 물음으로 귀결된다. 국민을 죽일 권리가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형제도의 가치가 응징이라면 사회의 사법 체계가 복수와 응징을 낳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치유와 회복을 불러오기를 원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용서에서 찾을 수 있다.

22) 오판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강인도교 조기폭파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육군 공병감 최창식 대령의 경우 1964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악용의 경우, 우리나라 군부 통치시절 민정학련사건과 인혁당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사건 등 부지기수이다.

#### IV.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된 용서의 신학적 의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랑이다. 이 사랑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심지어 원수까지- 사랑 하는 것이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서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진정한 회개도 용서를 전제로 삼고 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줄기차게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며, 자신의 불완전함과 자유의 남용으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인간들에게 베풀어지는 용서의 드라마라 할 수 있다.<sup>23)</sup> 따라서 성경에서 흔히 사랑이라는 말과 용서라는 말이 거의 함께 사용될 정도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사랑의 표현이 없이는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됨’(discipleship)을 일컫는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내건 가치에 따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sup>24)</sup>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준 대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주기도문에서처럼 용서를 실천함으로써-“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하나님의 용서-“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청하는 것이다.

23) 제석봉, 이성배, "용서의 신학적 의미와 사목상담에의 적용", 『현대가톨릭사상』 23집,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2000), p. 360.

24) Lawrence S. Cunningham, Keith. J. Egan, *Christian Spirituality: Themes from the Tradition*(New York: The Paulist Press, 1996), p. 7.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의 용서와 사랑의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따르는 필연적인 요구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깨달을 때 아무리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실천해야 할 본질적인 사항이다.

사실 용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는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인간성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현재의 인간 조건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과 타인의 관계를 손상시킨다. 죄는 인류의 일반적인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 때문에 죄의식과 벌과 죽음을 경험하고, 더욱 큰 죄를 짓고 현실을 부정 또는 왜곡하며, 하나님과 타인의 관계를 손상시킨다. 범죄 행동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 조건의 결과이며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up>25)</sup>

구원 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은 인간 문제의 적극적인 부분으로서의 자신을 깨닫는 법을 학습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다. 역사적 맥락에서나 개인적 삶에서나 인간의 취약함과 악을 범하기 쉬운 경향성을 이해할 때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을 필요성을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면 용서하기가 더욱 쉬어진다. 이를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 제석봉, 이성배, op. cit., p. 362.

첫째,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출애굽기에서 ‘살인하지 말라’(20:13, 신 5:17)는 말씀에 근거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탈취할 수 없다. 심지어 유사 이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를 주시고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다. 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에게 ‘일벌백계’의 본때를 보여 만인에게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동태복수법’으로 다스렸다면 오늘의 우리 주변에서 저 끔찍한 폭력과 살생이 난무하지 않았으련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살인자에게 왜 그토록 관대하셨을까? 그 이유는 비록 가인과 같은 살인자라 해도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길이길이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 말할 수 있다.<sup>26)</sup>

둘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못된 행실을 한 자라고 해서 죽이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겔 18:23, 33;11)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다.(눅 6:27-28) 살인 자체뿐 아니라 살의까지도 금하셨다.(마 5:22) 예수님은 불들려온 간음한 여인을 타살형 일보 직전에 그녀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모면케 해 주셨다.(요 8:11)

셋째,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은 복수는 부당한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 12:19)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복수는 인간관계에 대한 최종적 의도가 아니라 제한된 복수를 허용하는 것도 결코 목적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6) 김해철, 이정옥, 『목회행진』 (서울: 바위피엔디, 2001), pp. 78-79.

넷째,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마 26:52)고 말씀하셨으니 최후의 승리자는 칼이 아닌 사랑과 정의의 힘에 의해 이룩된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법정 사형에서 법정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7)</sup>

우리 모두는 엄격히 따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 틀림이 없다. 그것이 행위로 지었건, 마음으로 지었건 아니면 원죄 하에 태어난 죄인인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처형할 정도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고 하였다. 따라서 생명의 부여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탐색하면 다음과 같다.

최선의 대안으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에 제출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과 일치하는데, 헌법 제 10조에 명시된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형벌의 목적인 범죄인의 개선과 교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안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신형이란 사망할 때까지 형무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 징역과 종신금고를 말한다.

둘째는 사형집행 유예제도의 채택이다. 사형은 언도하지만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사실상 집행하지 아니한다. 또 이와 병행하여 사형선고에 불복한 사형수에 한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오판의 위험성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사형집행 유예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로 사형 선고에 있어서 대법관 전원일치의 제도적 틀을 도입한다. 사형의 오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형선고는 신중히 하도록 훈시규정을 두고, 사형판결에 있어 대법원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하여 사형

27) 김해철, op. cit. pp. 230-231.

합의 요건에 전원일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판결전 조사제도를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성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양형의 기초로 이용하게 하고, 사형 판결시 엄격한 재판의 성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시각의 개선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범죄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권 존중의 명언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범죄는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반면, 심각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일벌백계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래서인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과 ‘사형(capital punishment)은 돈이 없는 사람들(those without the capital)이 처벌받는다’는 것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법집행의 비공정성은 물론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부족함을 지적할 수 있기에 인권 개선과 존엄성 신장 차원에서 범죄자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 V. 나오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2세기 교부 성 이레네오(st. Irenaeus)가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Gloria Dei vivens homo)이라고 노래할 정도로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 가치를 논하는 기독교 윤리적 차원에서 제도적 폭력인 사형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은 생명의 창조자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침해이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인간의 미래 가능성을 인정치 않는 것이며, 하나님과 또는 사람과의 화해 가능성과 죄인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무참히 파괴하는 합법을 가장한 사회적 범죄이다. 인간의 생명은 일회적이며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인간이나 제도가 심판권을 갖지 못하며 어떤 이유로든 생명을 박탈, 말살할 수 없다.<sup>28)</sup>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념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며 도처에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회적 문제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인 사형제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제도적 폭력을 폐지하는 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요한 4:16)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을 요구한다. 예수는 원수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사랑을 호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원수에 대한 사랑을 제시하신다. 즉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눅 6:36, 마 5:48, 례 19:2). 그러므로 원수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안에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 자비 안에 근거하고 있다.

용서하라는 영어 표현인 ‘forgive’가 뜻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이 용서가 계속 영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이웃에게 계속 선물로 나누어야 한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찰스 스탠리(C. Stanley)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용서”라면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 할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으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독소와 같아서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sup>29)</sup>고 역설하면서 용서가 참된 자유의 시작임을 강조하였다.

2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형폐지위원회,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 기독교와 사형제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98), p. 258.

29) Charles Stanley, op. cit., pp. 20-21.

선량한 시민 20여명을 연쇄 살인하여 세상을 경악케 만들었던 사형수 유영철에게 노모와 부인과 이들을 줄지에 잃은 고정원씨는 “사형제가 유지되든 폐지되든 유영철은 그 제한된 장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텐데, 동정이 가는 것은 그가 남겼다는 자녀 둘이다. 유영철이 허락하고 상황이 된다면 내 친손자, 손녀처럼 돌봐주고 싶다”<sup>30)</sup>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였다. 또 9·11 테러로 아들을 잃은 올랜도 로드리게즈 부부는 『뉴욕 타임즈』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피해자 가족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테러범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사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9·11테러에서 일말의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테러범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를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sup>31)</sup>라는 말로 용서가 치유로 가는 길임을 깨우쳐 주었다.

한 인간으로서 일상의 삶에서 용서를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우며, 특히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증오와 복수심이라 해도 사랑과 용서보다 강하지 않다. 우리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이기에 제도적 살인자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인 사형 제도가 폐지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사형제도는 이 땅에서 한시라도 바빠 사라져야 할 마지막 형장의 이슬인 셈이다.

30) 한겨레신문 2006년 3월 28일.

31) Rachel King, op. cit., p. 371.

## 참고문헌

- 김영수, 『한국헌법사』 (서울: 학문사, 2000).
- 김정우,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대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1996).
- 김해철, “사형제도 폐지와 성서적 교훈”, 『신학과 신앙』 12집(서울: 루터대학교출판부, 2001).
- 김해철, 이정옥, 『목회행진』 (서울: 바위피엔디, 2001).
- 예장통합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서울: 쿰란출판사, 1996).
- 이수성, “사형폐지론 소고”, 『법학』 13(2), (서울: 서울대법대, 1972).
-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I』 (서울: 법문사, 1984).
- 이형국, “베카리아의 형벌사상에 대한 소고”, 『권문택교수회갑기년논문집』 (서울: 연세대학교, 1983).
- 제석봉, 이성배, “용서의 신학적 의미와 사목상담에의 적용”, 『현대가톨릭사상』 23집,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2000).
- King R., 황근하 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 (서울: 산티, 2006).
- Platon, 최문홍 역, 『소크라테스의 변명』 (서울: 성장출판사, 1989).
- Stanley C., 민혜경 역, 『용서』 (서울: 두란도, 2006).
- Cunningham L.S., Egan K. J., *Christian Spirituality: Themes from the Tradition*.(New York: The Paulist Press, 1996).
- Pojman L. P., *Life and Death :Grappling with the Moral Dilemma of our Times*(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1999).
- 한겨레신문, 2006년 3월 28일
- 한국일보, 2005년 9월 1일 참조
- [www.amnesty.org/library](http://www.amnesty.org/library)